【제3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(제1차 정례회)】

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심 사 보 고 서

2026년 9월 17일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6년 8월 25일, 영종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26년 9월 1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3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(제1차 정례회)
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6. 9. 4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예산실장 이재성)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: 1,292,348천원

- 일반예비비 :1,292,348천원

❍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(2건) : 86,850천원

- 일반예비비(2건) : 86,850천원

■ 민간인 재난지원 : 86,850천원

다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

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안영미)

❍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,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

❍ 예비비는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 및「지방재정법」제43조의 규정에 따라,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임

❍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,292,348천원 중 민간인 재난지원을 위한 주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, 총 2회에 걸쳐 예산액 대비 6.72%인 86,850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음

※ 2025. 8. 13.~14.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총 2회에 걸쳐 국·시·구비(예비비)로 425,000천원(주택 31세대, 소상공인 26개소) 지급

❍ 이는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❍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　　음

5. 토론요지

○ 없　　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및 기타

○ 없　　음